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9,522,465	11,085,674
일반회계		312,502,442	9,375,073
특별회계		57,020,023	1,710,601
	공기업특별회계	21,948,972	658,4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948,972	658,469
	기타특별회계	35,071,051	1,052,13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81,645	35,44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821,796	54,65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26,305	9,789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6,721	5,002
	기반시설특별회계	457,400	13,722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14,000	12,420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858,532	25,756
	주택사업특별회계	6,000	180
Ш	수질개선특별회계	29,838,652	895,160

제 2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조 (지방채 발행): "해당없음"

제 5조 (명시이월사업): "해당없음"

제 6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

제 7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515,532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예산의 이용):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재무활동경비
 -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